

한·인도간의 통상분쟁 현황과 사례 분석*

-인도의 반덤핑 관세정책을 중심으로-

Case analysis of trade dispute between Korea and India

이종원(Jong-Won Lee)

우석대학교 문화사회대 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시사점) |
| II. 한국의 대외수입규제 현황과 추이 | 참고문헌 |
| III. 인도의 반덤핑정책 운용과 적용실태 | Abstract |
| IV. 한·인도간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사례 | |

Abstract

As traditional import regulations have decreased all over the world in recent decades, the usage of "unconventional" trade protection measures has grow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antidumping investigations have risen rapidly and have growing in India and China.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provide countermeasures to our government and Korean exporting companies by studying characteristics of antidumping. India is one of the most frequent initiators of antidumping cases by protecting their industries and impeding imports from FTA. This year, economic exchanges of Korea and India will be increasing by the conclusion of CEPA. This will lead to the increase of dispute by import regula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to decrease Indian antidumping cases Korea will respond as follows. i) If antidumping laws, system and practice of India have injustice or are different from WTO rules, our government will have to indicate injustice and actively urge Indian government to make corrections. For example, they are continuous bilateral contact about the problems, fallacy of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 and intense investigations into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nd losses in dumping market, ect. ii) Our government should give more support to the small and medium exporting company which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rade conflicts, counseling, arbitrating a lawyer. iii) Our government which is in control of domestic trade relief system should strengthen its investigation ability about new regulations and monitor import regulations of India. Over the long time, Korean companies need to export competitive advantage items of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and build solidarity by technology transfer. Accordingly, that will result in the decrease of trade dispute in India.

Key Words : Antidumping, Trade dispute, Import regulations, India, CEPA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 론

1994년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협정¹⁾)이 발효되어 이듬해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역장벽이 철폐 또는 감소됨에 따라, 더욱 많은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 및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치수단으로 다양한 무역규제발동²⁾으로 인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에 제소 혹은 피소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FTA로 인한 시장개방과 경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자국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Anti-Dumping Duties: ADD),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 및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SG) 등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의 발동을 둘러싼 국가간 통상마찰도 증가하고 있어 동 제도들은 국제통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³⁾.

전통적으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 조치는 선진국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급격한 수입증대로 인하여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사후적 구제제도로써 빈번히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도국에서 동 제도를 사전적 수입관리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실, 반덤핑조치는 국내에서 보다 해외시장에서 저가로 판매하는 것은 시장약탈적(predatory) 행위로서 불공정한 경쟁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실은 무역규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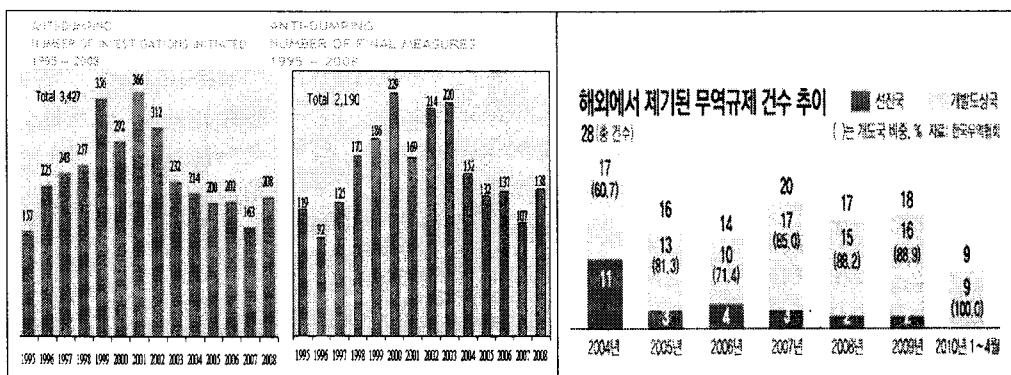
WTO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53개 회원국의 반덤핑조치는 281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201건) 대비 3분의 1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내

1) WTO 협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material)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 정부가 덤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이하 GATT협정) 제6조에 덤프방지세 및 상쇄관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체약국은 일국의 산물을 정상적인 가격이하로 타국의 산업에 도입하는 덤프인이 체약국 영역에 있어서 확립된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저연시킬 때에는 이 덤프인을 비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중략) 2. 체약국은 덤프를 상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덤프된 산물을 대하여 동산품에 관한 덤프의 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덤프방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조의 적용상 덤프의 폭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차를 말한다. Dumping in the GATT/WTO. Article VI of GATT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http://www.wto.org/>, Feb, 2010.

2) 이와 같이 무역규제수단이 다양하게 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정의 구성범위의 확대로 인한 분쟁 발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즉,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관세평가, 기술장벽, 농수산물, 섬유분야 등이 다자체계로 포함되었고,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원산지 규정, 선적전검사, 동·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 등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으로 새롭게 제정되어 상품분야에서도 다자협정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종원, “한·일간의 수입쿼터분쟁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7, p280.

3)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체 무역규제 중 개도국에서 제기한 비중은 2000년 61.3%에서 2009년 88.9%로 증가하였다. [그림I] 참조.

산업 보호에 따라 저가 수입품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가 68건의 가장 많고 미국(47건), 브라질(28건), 아르헨티나(23건), 유럽연합(20건) 등의 순이다. 또한, 2009년도 우리나라는 국가별 총 수입규제 122건 중 인도(26건), 중국(20건), 터키(10건), 파키스탄(6건), 인도네시아(6건)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선진국들로부터의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수입규제는 감소하는 반면, 인도, 중국⁴⁾ 등 개도국들의 수입규제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 WTO Secretariat reports increase in new anti-dumping investigations : 2009 PRESS RELEASES, 한국무역협회, 2010.

[그림1] 세계적으로 반덤핑조치 발동 추이 및 무역규제 건수 추이

우리제품에 대해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인도⁵⁾는 우리와 올 1월에 CEPA⁶⁾를 발효시켰다. 세계 12위, 13위 경제대국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상호 경쟁분야 및 경쟁우위분야에서 통상분쟁으로 인한 마찰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고 이로 인해 FTA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면 국내기업의 반덤핑 제소가 더욱 빈번해

4) 중국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기간 동안 14건의 반덤핑 규제 건수에 비해 규제를 받은 건수는 120건에 달해 인도와 함께 가장 대표되는 덤핑국의 불명예를 얻고 있다.

5) 인도는 11.5억 명(세계 2위, '08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4위 GDP(구매력평가기준 32,880억 달러)를 유한 신종 거대시장으로 2008년 기준 인도의 명목 GDP는 12,090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거대시장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큰 경제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4월 KOTRA 뉴델리KBC는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신종 종산층 소비지출 규모가 2006년 4,207억 달러에서 향후 20년간 17,300억 달러(4.1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도의 소비문화에 크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6)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져서 반덤핑 조사 건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⁷⁾. 한편으로는 반덤핑 조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양국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대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자체하는 경향도 있다⁸⁾.

국제통상분쟁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박형래·박영기(2001), 박진성(2003), 박노항(2005), 김태황(2005), 이종원(2003,2007), 전준만(2006), 박순찬(2007, 2008), 김현수(2008) 등이 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국제통상분쟁에 대한 주요내용과 문제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이 다수 있다. 그런데 이들 통상분쟁에 관한 연구 문헌 중 반덤핑규제에 대한 연구로 이태열(2003, 2004), 박형래(2004), 김태황(2005), 박노항(2005), 박순찬(2007,2008) 등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도국 중심의 반덤핑규제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 대한 관련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인도간의 CEPA로 인한 교역규모의 양적·질적 확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대상으로 가장 많이 제소를 하고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반덤핑 현황과 분쟁 유형과 해결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하여 인도의 對한국 반덤핑 제소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형태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 정부와 기업, 나아가 산업계 전반이 인도 제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대외수입규제 현황과 추이

1. 한국의 대외수입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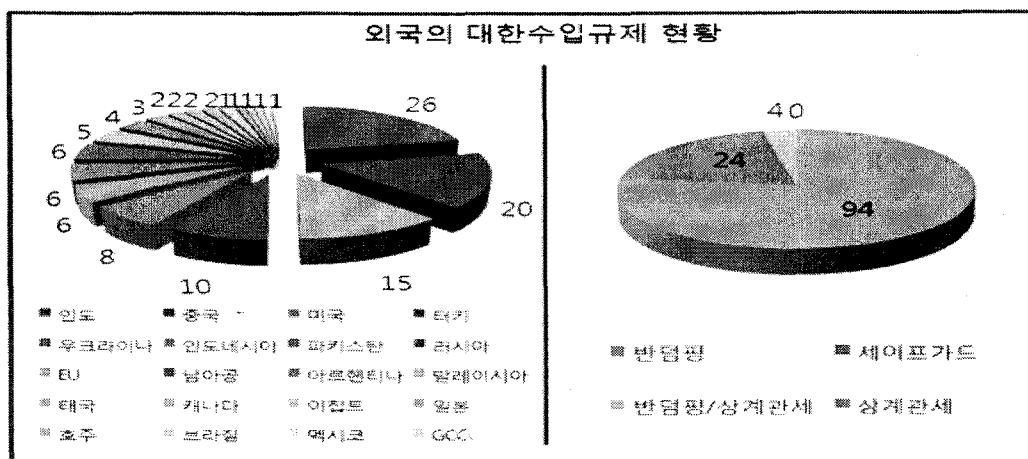
반덤핑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는 수입행정국 및 관련 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용하기 용이한 제도이다. 이는 수입규제의 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행위, 즉 덤플에 있으므로 수입제한에 따른 국제적 비난이나 교역상대국의 보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7) Feinberg and Olson은 다자주의 협상으로 관세가 크게 감축되면서 반덤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Feinberg, Robert M. and Kara M. Olson, "Tariff Liberalization and Increased Administrative Protection: Is There a Quid Pro Quo?", unpublished working paper,2005. 사실, 인도 정부는 우리와의 CEPA 체결 직후에도 화학과 철강분야에 각각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다.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포장용 필름: 자동차 내외장재, 가전제품 부품, 섬유 등에 주로 사용)에 대해서 2010년 2월 25일에 조사 개시하였다. 또한, 스테인리스 열연강판(Hot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첫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모양의 판재 半철강제품인 슬래브를 누르고 눌려서 얇게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는 2010년 4월 12일에 조사 개시 통보를 하였다.

8) Tec, R., T. Prusa and M. Budetta, "Trade Remedy Provisions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 2007.

뿐만 아니라 규제효과도 다른 수입규제수단에 비해 훨씬 크고 확실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특히 덤핑마진 산정에 있어 이윤이 10% 미만이라도 덤핑마진이 20~30%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수량제한보다 수입억제효과가 크다. 즉 수량제한은 수출국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확보되는데 반해 고율의 반덤핑조치는 경상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수출을 완전히 봉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⁹⁾.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치를 당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당국의 산업발전 단계로는 신규 또는 성장단계에 있으나 덤핑국 시장에서는 성숙단계 또는 쇠퇴기에 있는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출대상국의 국내시장으로의 진입가격은 진출기업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국 시장의 수급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시장진입가격과 덤핑국 내 정상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고율의 반덤핑과세를 부과 받게 된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반덤핑조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인데, 이들 국가들은 자국 내 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 만큼 자국 내 산업설립을 자연시키게 됨으로 반덤핑제도를 앞 다투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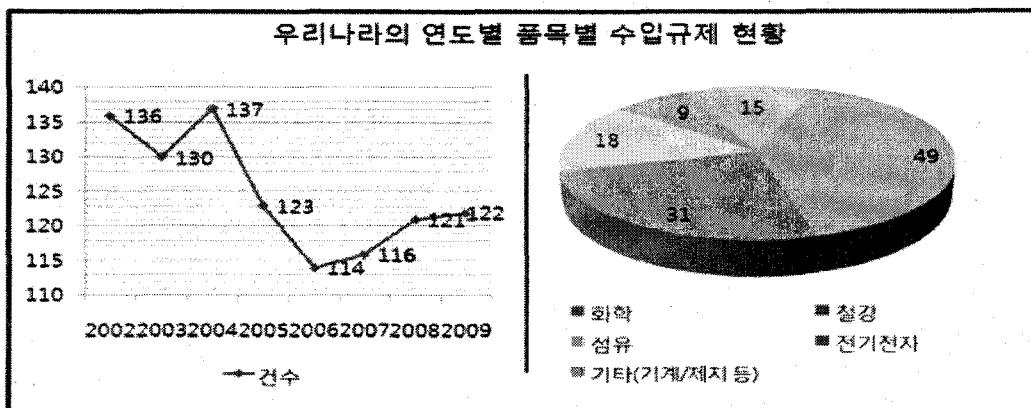


자료: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 내부자료를 기초로 작성, 2010.

[그림2] 외국의 대한 수입규제 국가 및 규제조치 현황

9) Prusa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상품의 수입량은 30~50% 감소하고, 제조사가 기각된다하더라도 수입은 감소하게 되어 국내 거시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의 경상수지 개선효과를 주장하였다. 박순찬의 “중국의 반덤핑조치의 수입제한효과” 연구논문에서는 중국은 동 조치로 연평균 수입을 30~42%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다. Prusa, T.J. and Skeath, S., “The Economic and Strategic Motives for Antidumping Filings”, NBER Working Paper, No. 8424, National Bureau of Research, 2001.

근년 개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교역장벽으로써 반덤핑규제는 우리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국의 반덤핑으로 제소된 건 수는 매년 1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고, FTA 체결로 인한 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는 점차 선진국¹⁰⁾보다 개도국이 더욱 활발하게 취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제품들이 상대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해짐과 동시에 개도국 시장에서의 재고물품 처리 혹은 시장을 점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상대국 시장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개도국이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수출규모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각종규제 및 자의적 해석과 판단으로 반덤핑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은 반덤핑조치로 제소만 하더라도 수입중단 및 조사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산업 보호 및 상대국의 수출 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빈번히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북미유럽연합통상과 내부자료를 기초로 작성, 2010.

[그림3] 한국의 연도별 수입규제 및 품목별 추이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100건을 넘고 있으며 2003년 최

10) 과거 선진국들은 덤프방지 관세를 국내산업 보호조치로 자주 발동하였고, 실질적인 부과여부에 상관없이 그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를 무기로 수출국을 위협함으로써 수출업자가 스스로 물량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여 덤프방지관세 부과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다. Marceau,G., "Anti-dumping and Anti-Trust Issues in Free-Trade Areas",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p.11-12.

고 137건을 기점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계속 120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은 인도·중국(62.5%), 철강은 미국(40%), 섬유는 인도·터키, 전기·전자는 EU가 수입규제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의 총 122건 중 인도가 26건, 중국 20건, 미국 15건, 우크라이나 8건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EU(5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도국에서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9년도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총 122건 중 94건이 반덤핑제소이며 긴급수입제한조치 24건, 반덤핑/상계관세¹¹⁾ 4건, 상계관세 0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총 122건 중 조사 중인 건수는 19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제품이 상대국에서 수입규제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화학 49건, 철강 31건, 섬유 18건, 전기전자 9건, 기타(기계/제지 등) 15건으로 화학과 철강분야가 전체 수입규제 대상 분야 중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인도의 반덤핑정책 운용과 적용실태

1. 인도의 반덤핑정책 운용¹²⁾

수입규제수단으로서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무역관행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 규제를 통한 수입억제를 도모하는 조치이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무역이기는 하지만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를 구제하는 조치이다¹³⁾. 반덤핑관세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선진 4개국에 국한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인도, 중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반덤핑관세 활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UR협상이 시작되면서 아시아 개도국과 중남미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무역구제제도 운용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기

11) 상계관세는 단독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원인이 수출업체의 단순한 덤핑 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수출국 정부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것인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12) <http://commerce.nic.in/>

13)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팡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농종산업이 덤팡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부과할 목적으로 덤팡 차액 이하에 상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농 관세는 GATT 1994 제6조 및 WTO협정 부속서 IA 반덤핑 정과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에 근거를 하고 있다.

관을 통하여 일원화시켜 운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내각의 두 개 부처에서 이원화시켜 운용하고 있다.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상무국(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반덤핑총국(DGAD; 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 Allied Duties)에서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세입국(Department of Revenue) 산하의 세이프가드총국(DGA; Directorate General of Safeguards)에서 세이프가드 조사 및 부과를 총괄하고 있다. DGAD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와 그 정도를 조사하고, 산업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중앙정부에 권고할 목적으로 1998년에 설치되었다. 반덤핑에 관한 법적 근거는 “the Customs Tariff Act,1975 Section 9A,9AA,9B,9C와 the Custom Tariff Rule,1995”에 규정되어 있다.

DGAD는 국내 산업이 덤플링몰품의 수입에 의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면 조사개시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국내 산업으로부터 행해진 서면신청에 의해서만 덤플링의 존재, 정도, 효과 등에 관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규정 SEC.5(1)). 단 반덤핑조사 신청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반덤핑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동종몰품¹⁴⁾의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반덤핑조사 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동종몰품의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DGAD가 국내 산업의 피해 및 덤플링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피해의 판정에 대해서 DGAD는 당해몰품의 객관적인 덤플링수입량과 당해몰품이 국내 동종몰품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당해몰품의 덤플링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몰품의 국내 생산자에게 초래되는 영향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DGAD는 덤플링마진¹⁵⁾을 일반적으로 정상가격(Normal Value)의 가중평균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여 판정하거나 각각의 거래별 가격에 근거하여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차이를 비교하여 판정해야 한다¹⁶⁾. 단 구매자나 지역 또는 기간별로 수출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개별가격을 비교하여 덤플링마진을 산정한다. 그 후 덤플링마진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반덤핑 조사개시 후 150일 이내에 판정하고, 이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덤플링마진 이내에서 잠정관세¹⁷⁾를 부과하

14) 동종몰품(like article)이란 반덤핑조사 대상몰품과 모든 점에서 아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의미한다.

15) 덤플링마진(dumping margin)이란 정상가격이 수출가격을 초과하는 액수를 말한다.

16)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때, 수출과 국내 판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당해몰품의 물리적 특성, 거래단계, 수량, 과세, 판매조건 등의 차이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반덤핑관세규정 Annexure I 6(I)).

게 된다.

그러나 잠정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면 덤핑수입의 효과로 인하여 피해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를 잠정관세의 부과일로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반덤핑관세규정 Sec.20(2)). 또한 중앙정부가 당해 덤핑수입품에 대해서 과거 덤핑전력(history of dumping) 혹은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수입품에 의해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정할 경우 확정 반덤핑관세는 잠정관세의 부과 전 90일 이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관세법 Sec.9A(3)).

이러한 DGAD 관세부과 명령에 반대하는 상소는 명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DGAD는 수시로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재심사는 심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반덤핑관세 규정 Sec.23).

2. 인도의 **對한 반덤핑 적용 현황**

인도 정부는 1992년 반덤핑제도를 시행한 이후, 1998년에 반덤핑 전담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등 반덤핑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방어하고 품목의 무역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영개선효과¹⁸⁾를 기대하며, 나아가 각국과의 FTA¹⁹⁾로 인한 수입개방조치에 대응방안으로 반덤핑제도를 빈번히 발동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 이러한 수입규제가 자주 발생되는데, 인도 또한 세계경제위기 시에 자국의 산업 및 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수입관세인상 및 비관세장벽 설치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즉, 2008년 말 이후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들이 일제히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²⁰⁾들을 경쟁

- 17) 잠정관세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지만, 수출자의 요청에 의하여 9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반덤핑관세규정 Sec.13).
- 18) 반덤핑조치를 통해 기대되는 일반적인 경영개선효과는 덤핑수입품의 급격한 감소 내지는 중단효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품목이 동 조치로 90% 이상 감소도 발생한다. 이러한 덤핑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내 제조기업들은 반덤핑 조치 후 생산증가, 가동률 향상, 출하량 및 매출이윤 증가, 기술 및 시설 투자확대 등 경영지표가 개선된다.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치 후 수혜품목 경쟁력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
- 19) 2010년 현재 인도가 체결한 국가는 스리랑카('00발효), 아프가니스탄('03발효), 싱가포르('05발효), 방글라데시('06효), BIMST-EC('06발효), SAFTA('06발효), 칠레('07발효), MERCOSUR('09발효), 한국 및 ASEAN('10발효). 현재 협상 중인 국가는 EU, 일본, GCC, 태국이며 검토 중인 국가는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 20) 어린이용품 수입에 대해 제3자의 적합성인증 의무화,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정보보안제품에 대해 강제인증, 수입 공산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인증서 요구 등 안전 및 제품 적합성 및 기술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WTO에 따르면, 각국의 새로운 기술규제는 2007년 875건에서 2008년 1016건으로 늘어났고, 2009년 1247건까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자국 산업 보호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 역시 각종 품목 및 철강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규제 대상 범위의 확대 및 덤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²¹⁾.

인도의 반덤핑조치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제소대상품목이 장악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자국 기업이 동종물품의 생산을 개시한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즉, 자국 내에서 경쟁상품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외국의 수출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덤프공세를 취하게 되고, 자국 업체는 시장진입단계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반덤핑제도에 호소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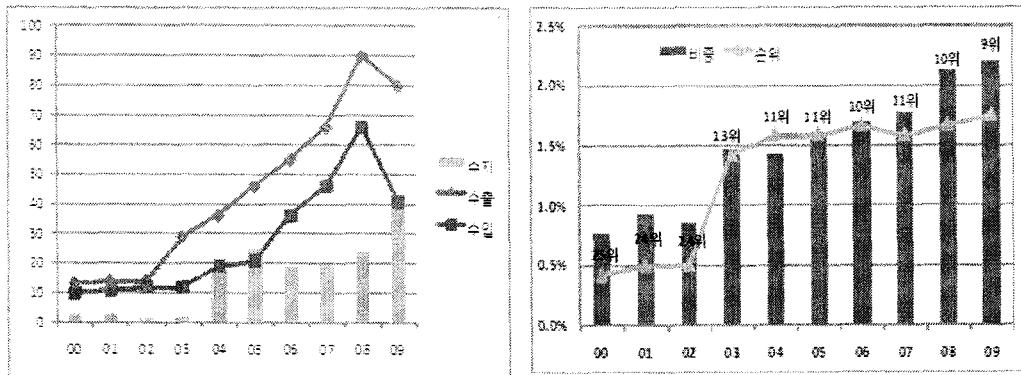
인도 정부는 2007년 WTO로부터 고관세와 반덤핑 조치 증가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을 정도로 세계 통상분쟁에 중심에 있다²²⁾. 더욱이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한·인도 CEPA 와, 인도·아세안(ASEAN) FTA로 전자, 화학, 기계, 섬유 등 80% 이상의 교역 상품의 관세가 2013년~2016년 사이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등, 현재 10개 이상의 대외 FTA 체결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에 대비한 자국 산업 보호 및 수입규제 차원에서 반덤핑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对인도 수출금액은 2000년 13억 2천만 달러에서 2009년 80억 1천만 달러로 약 6배, 수입금액은 2000년 9억 8천만 달러에서 2009년 41억 4천만 달러로 약 4배, 무역수지 흑자는 2000년 3억 4천만 달러에서 2009년 38억 7천만 달러로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이었으며 상위 4대 품목은 10년간 연평균 25%가 넘는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품은 나프타, 식물성물질, 천연섬유사, 기타금속광물, 정밀화학 원료 등이었다.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은 현대차의 인도 현지생산 증가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었다. 1위 수입품목인 나프타는 对인도 수입확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며 인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나프타 1위 수입국이다²³⁾.

21) 송원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추세와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9. 2008년 10월 이후 인도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다양한 수출상품(금속, 적물, 타일, 타이어 등)에 대해 무역구제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액수로만 따져도 15억 달러(2조79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중국제품에 대한 자국 일자리 및 경쟁품목에 대해서 반덤핑조치 등 약 20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시작하였고,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 도입 및 관세를 15%까지 인상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5개 업체가 인도로 수출하는 철강제는 2007년 기준으로 9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22) WTO는 인도의 반덤핑조치와 라벨링 및 품질에 대한 인증요구가 증가하는 것과 고관세율,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WTO Secretariat reports increase in new anti-dumping investigations. <http://www.wt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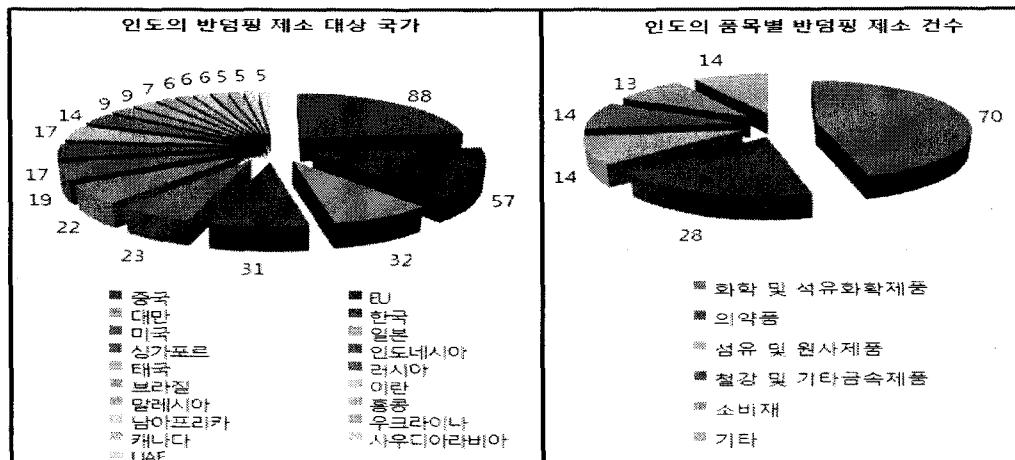
23) 이경태, “한·인도 교역 10년 평가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2010.

[그림4]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입동향과 수출비중 및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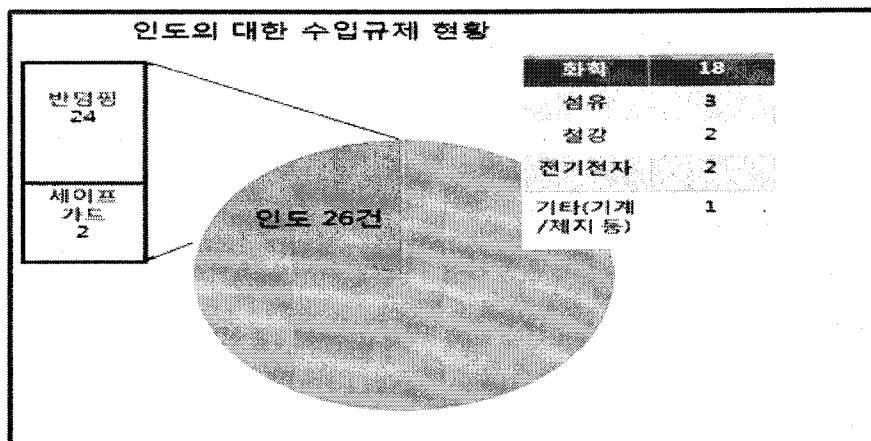
이러한 對인도 수출입 증가를 반영하듯이, 인도의 국가별 반덤핑제소 국가를 보면 [그림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EU, 대만, 한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품목별 반덤핑제소 건수는 화학과 석유화학제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의약품, 섬유, 철강 등의 순으로 제소가 되고 있다. 1992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한자리수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1998년부터 년 50건 정도에서 2000년도에 들어서는 년 80건에 가까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WTO 출범 이후 GATT체제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각종 수입 장벽을 유지·활용하기 곤란해짐에 따라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자료: 인도 상공부 반덤핑국 자료를 기초로 작성. <http://commerce.nic.in/> 2010.

[그림5] 인도의 국가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또한, FTA 체결로 인한 수입억제 효과를 반덤핑 조치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2000년에 스리랑카와 FTA를 체결하면서부터 농산물 및 소비재 완제품을 중심으로 714개 품목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그 후 잔존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수량제한 및 특별수입허가 품목의 수입제한을 완전 철폐하였다. 즉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대상으로 일정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⁴⁾. 이에 따라 인도 정부 입장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관세 및 반덤핑 조치 등 전별 규제조치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입억제의 유효한 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북미유럽연합통상과 내부자료를 기초로 작성, 2010.

[그림6] 한국의 연도별 수입규제 및 품목별 추이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분쟁국 중 가장 많은 제소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인데, 인도는 대한 수입규제 총 122건 중 26건을 수입규제 대상으로 제소를 하고 있으며, 이 중 반덤핑 건수가 24건 세이프가드 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로는 화학이 18건, 섬유 3건, 철강 2건, 전기전자 2건, 기타(기계/제지 등) 1건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대한 수입규제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은, 인도시장이 가격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바이어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보다는 마진에 따라 수입처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특성이 있고, 또한 우리 수출업체들도 높은 물류비용 및 고관세부과로 인한 저 마진으로 인도시장을

24) <http://exim.indiamart.com>

재고 및 수출물량 쳐분장으로 인식한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⁵⁾.

인도에서 반덤핑제도가 확립된 이후의 반덤핑 제소 대상으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것은 화학 및 석유화학제품이다. 우리나라도 인도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NBR, 아크릴단섬유, SBR(합성고무), 시아나트륨, EDPM, 폴리에스터 필름 등이고, 2000년대 중반까지는 POV, PIB, 가성소다, 압연롤, 소듐아황산염, 탄산칼륨, 염화메틸, 나일론사(Nylon Filament Yarn) 등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는 Rubber Chemicals PX-13 (6PPD 고무노화방지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아세톤(Acetone), 인산(Phosphoric Acid), PS Plates(인쇄용), 페놀(Phenol), CD-R(Compact Disc Recordable), TV 음극선관, PVC(폴리염화비닐), 무수프탈산, 옥소알콜, 폴리프로필렌,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의 품목으로 거의 대부분이 화학제품 및 일부 철강제품에 반덤핑 규제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집중되고 있다²⁶⁾.

이러한 현상은 화학제품이 산업특성상 세계적인 기술수준이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 관련 품목과 인도의 해당 국내산업 간 경합관계가 점차 증대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의 기본원료인 나프타는 우리나라가 **對**인도 수입품목 중 1위로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2009년에는 합금철 및 제강용 비합금 선철 등이 3,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한·인도 CEPA에서도 우리측 양허품목에서도 나프타, 벤젠 및 적철광, 폴리카보네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인도제품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국내 동종기업의 피해와 마찰이 예상된다.

IV. 한·인도간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사례

1. 인도의 **對**한국 반덤핑에 대한 사례

본 장에서는 인도가 제소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사례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이 협력하고 지속적인 인도 상공부와의 접촉 및 노력으로 해결한 사례, 반덤핑사례(탄산칼륨

25) 박선민은 우리기업들이 마진율은 비교적 낮게, 수량을 늘리는 박리다매형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는 인도 및 중국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의 열위와 유럽 및 일본에 비해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인도시장 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박선민, “우리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동향과 성공요인”, 「한국무역협회」, 2010.

26)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2010.

과 가성소다)와 세이프가드사례(열연강판, 코팅종이, 무수프탈산과 옥소알코올)에 대해서 제소 과정과 현황, 그리고 해결방법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 탄산칼륨

제품명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규제국	인도	파규제국	한국
산업부문	화학	HS Code(한국 HS)	2836.40(2836.40)
제품설명	약알칼리성의 백색 분말 또는 무색무취 액상제품으로, TV 브라운관용 벌브, 크리스탈, 광학유리, 고농축세제, 화학비료 등의 고품질 기초 원료로 사용됨.		
최근 4년간 수출통계 (단위:천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7,465(24.6%) ○ 2007년 7,130(23.8%) ○ 2008년 10,988(22.1%) ○ 2009년 9,396 		

현황

- 2002.12월 조사개시
- 03.4월 예비판정
 - 덤핑마진 : 17.3% (유니드)
- 04.2월 최종판정
 - 유니드 : \$9.45/Mt(마진율 2.47%)
 - 유니드이또추 : \$11.03/Mt(2.89%)
 - 기타 : \$123.86/Mt(35.78%)
- 08.5.21 일몰재심 개시
- 09.3.24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개최
- 09.4.22~4.24 현지실사 실시
- 09.5.14 조사결과 공개
- 09.5.18 인도 상공부에 정부입장서 제출
- 09.5.21 최종판정
 - ※ 정부입장 반영하여 마진 하향한 최초사례
 - 반덤핑 관세 : 유니드 : \$9.45/Mt(마진율 1.5%) 기타: \$123.86/Mt(35.78%)

우리측은 인도의 한국산 탄산칼륨 일몰재심²⁷⁾ 조사결과를 관련 업체인 유니드에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인도 덤핑마진 산정방법의 불합리성을 정부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의 조사결과 공개에 대해 2009년5월 18일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서를 인도 상공부에 제출하였다.

27) 일몰재심(Sunset Review)이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 국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WTO의 규정이다.

인도는 ①WTO 반덤핑 협정 제2.2.1.1조 및 인도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²⁸⁾)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경우, 관련 비용은 동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함. ② WTO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라 반덤핑관세부과라는 확정적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essential facts)을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함.

인도의 조사결과(disclosure statements)는 첫째, 한국 수출자가 GAAP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영한 생산 및 판매비용을 근거로 덤픽마진을 산정되지 않았으며, 둘째, 인도가 덤픽마진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된 핵심적 고려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고, 셋째, 인도가 통보한 조사결과 자료를 사용하여 덤픽마진을 계산하더라도 덤픽마진이 5.9%임에도 불구하고, 6.83%로 계산한 계산상 오류가 존재함.

우리측의 요청서에 의거하여 인도측은 덤픽마진 산정에 근거가 된 핵심적 고려사항(계산식 및 계산에 근거가 된 자료)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최종 덤픽마진 결정시 우리 기업이 주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산상의 오류 점을 수정하여 덤픽마진을 재 산정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인도 상공부는 2009년 5월 20일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당초 통보된 6.83%에서 대폭 하향조정하여 1.5%로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최종 판정문에서 우리 정부의 지적을 수용한다는 점도 아울러 기술한다고 하였다. 이번 한국산 탄산칼륨 반덤핑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통보된 반덤핑관세율을 고수하여 왔던 인도 정부의 그간 관례상 금번 반덤핑관세율 하향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우리 정부가 인도 당국의 덤픽률 산정방식의 부당성과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 업체는 향후 5년간 약 291만 달러의 비용 절감²⁹⁾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28) GAAP는(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는 특정거래, 사건을 인식, 측정하고 이를 보고하는 기준 및 절차, 기업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 등에 보고하는 방법을 말한다.

29) 2008년도 수출액 1,099만불 x 5.3%(축소된 관세율 폭 : 6.8%-1.5%) x 5년(관세부과기간).

2) 가성소다

제품명	가성소다(Caustic soda)		
규제국	인도	피규제국	한국·중국
산업부문	화학	HS Code (한국 HS)	2815.1101/1102/1200 (2815.11/12)
제품설명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알칼리성 기초화학제품으로, 용액은 무색무취. 비누, 제지, 섬유, 식품, 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최근에는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도 사용		
최근 4년간 수출통계(단위:천불)	○ 2006년 6,745(9.4%) ○ 2008년 1,072(0.9%)	○ 2007년 4,838(6.3%) ○ 2009년 7,319	

현황

- * 반덤핑 관세율 : 354.4 불/톤
- 02.5월 조사개시
- 02.9.21 예비판정
- 03.8.4 최종 판정
 - 한화석유화학: 무협의, 기타: \$295.27/Mt과 수입가격의 차액만큼 반덤핑관세 부과
- 07.11.22 일몰재심 개시
- 08.11.21 일몰재심 판정(규제지속)
 - 한화: 무협의(-1.21%)
 - ※ 중국 65.08%m 미국 17.91%
 - 기타: \$401.05/Mt와 수입가격의 차이(8.18%)
- 10.5.3 인도 국내산업의 상황변경 재심신청 접수
- 10.6.8 인도 국내산업의 상황변경 재심 개시

우리측 입장	수출 지속
--------	-------

인도 정부는 자국에 수입되는 가성소다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동 조치를 종결한다고 2010년 4월 9일자 고시하였다. 우리 기업의 對인도 가성소다 수출액은 연간 900만 달러 수준으로, 이번 판정으로 인해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對인도 수출중단 우려가 해소되고, 인도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동 조사 개시 직후부터 인도 정부에 관세부과가 부당함과 동시에 2009년 9월 17일 우리 정부의 입장서를 인도 상공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 8일에 공청회시 의견개진 등 업체(한화케미칼 등)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하여 동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2. 인도의 **對한국 세이프가드의 사례**³⁰⁾

1) 열연강판

인도의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非부과 최종판정에 대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 정부는 자국에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부과 필요성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2009년 12월 8일에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는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2009년 4월 9일에 개시하여 4월 23일에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바 있으며, 우리 관련 업체로는 포스코가 그 중심이 되어 수출해오고 있다. 우리 기업의 **對인도 열연강판 수출액은 연간 4억 달러 수준 상당한 수출실적을 기록해오고 있다.** 따라서 동 판정으로 인해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對인도 수출중단을 방지하고 25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 열연강판 시장에 진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자국에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한 것은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꾸준한 **對인도 설득** 작업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동 조사개시 직후부터 인도 정부에 세이프가드 관세부과가 부당함을 적극 교섭하여 2009년 5월 11일에 잠정관세 부과를 연기시킨바 있으며, 동년 5월 12일에 우리 정부의 입장서를 인도 상공부에 제출하였고, 7월 6일에는 수입규제대책 반 파견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관세부과 취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와 함께 2009년 6월 24일 한·인도 외교장관회담 및 통상장관회담(4월 27일, 8월 7일, 10월 24일)에서 도 본 건과 함께 세이프가드 발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신청한 인도 업체의 신청 상 결격사유 및 인도 철강 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있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고, 인도 정부도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관세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2) 코팅종이

인도의 한국산 코팅종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非부과 최종판정에 대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 정부는 자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코팅종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자국 산업에 피해가 없는 관계로 부과 필요성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는 코팅종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2009년 4월 20일에 개시하여 4월 24일에

30) 외교통상부, 2010.

2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바 있으며, 우리 관련업체로는 한솔제지 및 무립제지 등이 대상이 되었다. 우리 기업의 **對인도 코팅종이 수출액은 연간 2,500만 달러 수준으로, 동 판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500만 달러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5억 달러 수준의 인도 코팅종이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정부가 자국에 수입되는 코팅종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한 것은 우리 정부와 제지업체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꾸준한 **對인도 설득작업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동 조사개시 직후부터 인도 정부에게 세이프가드 관세부과가 부당함을 적극 교섭하여 2009년 5월 11일 20%의 잠정관세부과를 연기시킨바 있으며, 5월 19일 우리 정부는 정부 입장서를 인도 상공부에 제출하였다. 위의 열연강판 전과 함께 적극적으로 인도 정부와 접촉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도 정부는 조사결과 코팅종이 수입이 급증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인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우리 정부가 인도 산업의 피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코팅종이와는 별도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 중이던 **非코팅종이(복사지), 선형 알킬벤젠, 아크릴 섬유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관세 **非부과 최종 판정을 내렸다.****

3) 무스프탈산과 옥소알코올

무스프탈산은 인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예비판정을 내린 분쟁이다. 무스프탈산은 프탈산을 가열, 탈수하여 얻는 순백색 바늘 모양의 결정으로, 폴리에스터 수지, 염료 중간재, 안료 등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인도 정부는 2008년 11월 28일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고, 2009년 1월 1일에 예비판정을 내려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200일간 수입금액의 25% 긴급보호관세를 잠정 부과 받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 상공부에 이해당사자 조사 참여 요청을 함과 동시에, 애경유화가 의견서 제출시한 연장 요청을 하는 등 관세부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9년 2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9년 3월 6일에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공청회 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인도 상공부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2009년 5월 28일 인도 정부는 최종판정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1년차, 즉 2009.1.29~2010.1.28까지는 25%의 부과를 명령하였고, 2년차, 즉 2010.1.29~2011.1.28까지는 20%, 3년차, 즉

2011.1.29~2012.1.28까지는 15%를 부과하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동제품은 인도에 2006년 약 396만 달러, 2007년 약 1,825만 달러, 2008년 약 1,770달러, 2009년 중반까지 1,095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옥소알코올은 인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란, 사우디, UAE, 독일, 미국,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최종판정을 내린 분쟁이다. 옥탄올은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는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가소제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부탄올은 도료 등의 용제로 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동 제품에 대해서 인도 정부는 2009년 1월 16일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통보를 하고 신속하게 동년 5월 27일에 최종판정을 내린 사건이다. 인도 정부는 1년차 10%, 2년차 7.5%, 3년차 5%의 부과 판정을 내렸다. 동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對인도 수출액은 2008년 130만 달러이고, 2009년 상반기 41만 달러였다.

V. 결 론(시사점)

본 논문의 연구는 우리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수입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2010년 1월 1일을 기하여 CEPA 체결을 한 인도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평균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 기업의 손실뿐만 아니라, 세계 통상 10위권에 부합하는 통상정책이 필요하다. 무한경쟁시대의 개방된 시장체계 아래서 우리 정부와 통상기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선제대응으로 국내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수입규제를 당하는 분쟁사례도 적극적으로 줄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제소할 경우 해명 자료만 충실히 준비하면 되지만, 개도국은 제소업체와 해당국 정부가 밀착해 수입규제를 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업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관계자가 불합리한 점을 직접 설명하는 등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탄산칼륨 반덤핑제소 건은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하여 마진을 하향한 최초사례이고, 언급된 몇 가지 사례들은 우리 정부가 국내업체들과 상호협력을 취하여 인도 상공부에 자료 제출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낮은 덤핑마진율을 가져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사건을 조기 종료하는 등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성공사례로써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사례에서 보여준 대응조치, 즉 첫째, 상대국의 시장피해 및 인과관계 조사자료 제시, 둘째,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 수출자의 회계자료 불인정에 대한 이의제기, 둘째, 덤픽마진 산정 방식에 대한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자료 및 주장에 대한 대응조치, 셋째, 덤픽마진 산정시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부, 기업, 관련 전문기관 협력공조, 넷째, 별도 대책반 운영, 정부 입장서 제출, 양자협의 의제화 등 다양한 조치 등이 앞으로 우리가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향후 한·인도 CEPA 체결로 인한 인도와의 경쟁품목 및 경쟁열위에 있는 물품에 대해 피해 소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상대시장과 국내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피해 최소화와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다음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KOTRA 무역관,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전 대응 시스템 및 주요국의 새로운 규제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지 변호사 고용도 늘려서 전반적인 대응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피소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액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업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자원부 주관 민관합동 수입규제대책반회의에서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능품목 점검, 상대국의 수입규제 동향 점검하고, 사전적인 경보체제와 제소가능 기업에게 관심, 주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제소 이전 단계에서부터 반덤핑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사전적인 제소 발생 요건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KOTRA 등 무역유관기관 및 주요 업종별단체별(철강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화섬협회 등)로 관련 제소에 대한 공동의 협력방안과 긴밀한 대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덤픽행위 조사가 개시된 경우 정부는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개별 기업들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전문화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예비 판정 이후 과정에서는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 협회 및 개별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가격 인상 약속, 수출선 다변화 등 경제적 조치나 WTO 분쟁 제소 등 사법적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먼저, 우리 수출기업이 현지 산업과 시장동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정한 가격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전략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는 인도 및 중국과 같은 개도국과 경쟁하는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제품이 아니라 고부 가가치 제품 위주로 수출하도록 유도하고, 지금까지의 수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유·지도하는 한편, 상대국의 관련 업계와 기술이전 등으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전략과 정책으로 수입규제 피해소국의 오명을 줄여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 자유무역체제에 부합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태환, “유럽연합(EU)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 분석”, 「무역학회지」, 제30권 제6호, 한국무역학회, 2005.
-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치 후 수혜품목 경쟁력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무역협회, 2008.
- 박진성,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통상분쟁 사례분석”, 2002 貿易學者 全國大會 發表論文集 空軍무역 전략 분과, 한국무역학회, 2002.
- 박형래, “USITC의 대 아시아 개도국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4.
- 박순찬 “중국의 반덤핑조치의 수입제한효과”, 「경상논총」, 한독경상학회, 제25권, 2호, 2007.
- _____, “자유무역협정(FTA)과 반덤핑 빌동에 대한 실증연구”, 「경상논총」, 제26권 3호, 한독
- 박선민, “우리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동향과 성공요인”, 「한국무역협회」, 2010. 경상학회, 2008.
- 송원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추세와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9.
- 이태열, “반덤핑조치의 확산과 특징에 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 이종원, “한·일간의 수입쿼터분쟁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7.
- _____, “일본의 대인도 EPA체결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8권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 이경태, “한·인도 교역 10년 평가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0.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2010.

DGAD, Annual Report 2008-2009, Department of Commerce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Gov. of India, 2009.

Feinberg, Robert M. and Kara M. Olson, "Tariff Liberalization and Increased Administrative Protection: Is There a Quid Pro Quo?", unpublished working paper, 2005.

Marceau,G, "Anti-dumping and Anti-Trust Issues in Free-Trade Areas",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p.11-12.

Ministry of Commerce(India), Anti Dumping Guidelines, <http://commerce.nic.in/Anti-Dum.PDF>, 2010.

Prusa, T.J. and Skeath, S., "The Economic and Strategic Motives for Antidumping Filings", NBER Working Paper, No. 8424, National Bureau of Research, 2001.

Tec, R., T. Prusa and M. Budetta, "Trade Remedy Provisions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 2007.

Vandenbussche, H. and Zanardi, M, "The Global Chiling Effects, of Antidumping Proliferration", CEPR Discussion paper, No. 5597,CEPR.

WTO, Annual Report 2009, 2010.

<http://www.anticdumpingpublish.com>

<http://commerce.nic.in/>

<http://exim.indiamart.com>

<http://www.ktc.go.kr>

<http://www.kotra.or.kr>

<http://www.mke.go.kr>

<http://www.mofat.go.kr>

<http://www.wto.org/>